

1. 개정이유

저성장·고물가, 저출산·고령화 등 보험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우체국 보험 영업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고, 그에 따른 모집자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“모집자 보상금 지급 대상 추가(안 제63조)”

- 1)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2) 현재 시행규칙에는 직접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만 모집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, 신규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모집에 기여한 자에게도 모집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3) 우체국보험 모집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우체국보험 증대 활동에 기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호 중 “모집한”을 “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3조(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.
1. 모집자 보상금: 직접 <u>모집한</u> 자(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)	1. ----- <u>모집한</u> <u>자 및 모집에 기여한</u> ----- -----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